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81
----------	----

발의연월일 : 2019년 1월 15일

발 의 자 : 이명순 의원

찬 성 자 : 이주용, 박찬원

지광천, 심현정

전수일 의원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중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19년 1월 21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나.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심 사 제 획

1. 활동목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사안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

3. 활동기간

- 2019년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한다.

4. 구 성

- 이주용 의원, 박찬원 의원, 지광천 의원, 심현정 의원, 전수일 의원
이명순 의원

5. 운영계획

일시	차 수	내 용	비고
2019. 1.21 (월)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사특별 위원회 (15:00)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설치)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의 심사를 포함한다.

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찬성의원 서명명부

○ 발의자 : 이명순 의원

연번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1	평창군의회 부의장	이주웅	이주웅
2	평창군의회 의원	박찬원	박찬원
3	평창군의회 의원	지광천	지광천
4	평창군의회 의원	심현정	심현정
5	평창군의회 의원	전수일	전수일